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일용·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10
 [참고]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사례	11

I. 개요

1.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8. 2.
- (3) 회 부 일 : 2024.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결국,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으며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어 더 불안한 노후를 맞게 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

려는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업장당연가입 근로자로 편입하여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제1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일용·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일용근로자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근로자’에 포함하여 현행법 제8조제1항1)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등) ① -----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는 제외한다.	1. ----- ----- ----- ----- ----- -----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신 설>	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 설>	나.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1)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현행	개정안
2. ~ 19. (생략)	2. ~ 1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단기간근로자”라 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²⁾

□ 다만, 일용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공하면서 근로일수나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되며,

단시간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등도 ‘근로자’에 포함됨.

□ 한편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일용근로자·단기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 가운데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왔음.

- (일용근로자·단기간근로자 중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³⁾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종전에는 근로일수가 1개월간 20일 이상이어야 ‘근로자’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 7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되었고, 2021년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어 현재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어도 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⁴⁾ 이상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되게 되었음.

- (그 외 일용근로자·단기간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종전에는 근로일수가 1개월간 20일 이상이어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의미함.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야 ‘근로자’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 7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되었고, 2021년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어 현재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고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되게 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종전에는 대학의 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에 포함되려면 ‘생업’이 근로 제공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건이 삭제되었고, 2021년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어 현재는 계속 근로 제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등도 ‘근로자’에 포함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일용근로자·단기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등”이라 한다) 중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음에도,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일용·단기간근로자나 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신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만 한정·명시하고, 일용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노후생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같이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연금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4.5%씩을 부담하게 되어 일용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⁵⁾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들이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의무⁶⁾를 지게 되는바,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이 장기체납⁷⁾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액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더라도, 연금보험료가 매달의 임금에서 원천공제됨에 따라 실제 수령하게 되는 가처분소득이 일부 감소하게 되는바,⁸⁾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

5)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6)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059,371명이고, 이 중 체납기간이 13개월 이상인 장기체납자는 71.4%(756,385명)임.

8) 일용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면 월 가처분소득은 적어도 17,550원[2024년 1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39만원)의 4.5%] 이상 감소하게 됨.

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⁹⁾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 일용근로자등의 가처분소득 감소분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일용근로자등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및 자격변동 신고의무¹⁰⁾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①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등의 범위를 확대하여온 전례의 경과규정(대통령령 제29073호 부칙 제2조¹¹⁾)이나 적용례(대통령령 제30819호 부칙 제2조¹²⁾)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일용근로자등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1) 대통령령 제2907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대통령령 제3081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재임용되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보건복지부) 일용·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용·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전면 적용 시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직군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중소기업건설기업의 행정업무 증가 및 건설원가 상승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1)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서는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근로자’로 정의하면서,¹³⁾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⁴⁾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제1호),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제2호),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제3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제4호)는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¹⁵⁾

13)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4)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후략)

1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

<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범위 >

구분	범위
사업장 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제외 대상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단,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단,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¹⁶⁾하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¹⁷⁾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음.¹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 >

구분	범위
직장 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제외 대상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16)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17)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18)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구분	범위
제외 대상 (계속)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법」¹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²⁰⁾은 근로자를 사용하

19)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024. 6. 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범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²¹⁾

2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